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

【문제 1】 “K편의점”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甲은 A시(市) 소재 K편의점을 운영할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. 마침 편의점 운영을 계획 중이던 乙은 甲으로부터 위 편의점의 현재수익과 예상수익의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, 이를 기초로 2022. 6. 12. 甲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K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. (50점)

제3조(가맹기간)
가맹사업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제7조(계약의 즉시해지)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은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1.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
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甲은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1. 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

※ 아래 물음 1), 물음 2)는 별개의 독립된 문제임

물음 1) 위 사례에서 정보공개서의 편의점 예상수익 등의 산출근거가 甲에 의해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위 계약체결 당시 乙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은 것에 중과실(重過失)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. 乙은 착오로 인한 가맹계약의 취소 또는 위 계약 제7조 제1항 1호에 기해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. 乙의 취소권과 해지권 행사가 각각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시오. (30점)

물음 2) 위 사례에서 乙은 “甲이 예상수익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”는 허위사실을 가맹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개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,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. 甲은 위 계약 제7조 제2항 1호에 기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계약의 해지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

【문제 2】 乙은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 “A활어회”라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甲 가맹본부와 직접 횟감을 공급받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. 丙은 乙의 횟집에서 甲이 공급한 회를 사먹고 장염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았다. 그 원인은 甲의 과실에 의한 일부 횟감의 부패로 밝혀졌다.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乙이 전액 배상한 경우, 乙은 甲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. (25점)

【문제 3】 가맹본부 甲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희망자 乙에게 제공하였다. 乙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후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, 그 대가로 가맹금(1억원)을 지급하였다. 이후 乙은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, 그 사항이 제공되었다면 乙은 위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였다.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다. 이 경우,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금 반환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,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. (25점)